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6 (목)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11. 27(월)

다. 상정일자 : 2006. 12. 5(화) 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 5)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진)

가. 제안이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개정에 의하여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재난으로 판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보고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 11일(조례 제1787호) 공포된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 나. 폐지되는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원여부 판단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었으며
운영결과,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
재난으로 판명하게 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보고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부 끝.**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 |
|------|----|
| 의안번호 | 30 |
|------|----|

제출년월일 : 2006. 11. 1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개정에 의하여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재난으로 판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심의회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 보고 체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2006. 9. 8 ~ 10. 2 실시결과 의견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2006. 5 중앙재난대책본부)

□ 인명피해 처리 세부지침

- 인명피해 보고 : 발생 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
 - 보고계통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 입력 즉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 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재입력 지시 등 이행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 해당 입력란에 즉시 입력
-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통계에는 포함시키나 복구계획 수립에서는 제외
- 피해발생 시도에서는 사망,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주소지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 등으로 통보
-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폐지(2006. 5. 15)